

서울특별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출자 및 제출경과

- 의안번호 : 488번
- 발의자 : 김달호 의원 외 9명
- 발의일 : 2019년 3월 25일
- 회부일 : 2019년 3월 26일

2. 제안이유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는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장애 차별을 금지하고 있음.
- 또한, 유엔의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제29조는 장애인이 차별 없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공적 활동 수행에 효과적이고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
- 아울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8조의 경우에도 “위원이 신체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극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라고 된 부분을 장애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 소지가 있어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곤란하게 되거나 불 가능하게 된 경우”로 개정('16.2.3)한 바 있음.

- 이에 따라 현행 조례 제12조제1호 중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라는 문구는 ‘장애’가 ‘직무수행’을 가로막는다는 인식을 주어 장애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강화할 수 있는 만큼 ‘장애’라는 단어가 부각되지 않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한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의회 보고 규정을 소관 상임위원회로 명확하게 함(안 제3조 제2항).
- 장애인의 편견과 차별 소지가 있는 위원 위촉 해제 사유를 개정함(안 제12조제1호).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국가 인권위원회법」, 유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
- 다. 입법예고(2019.3.29. ~ 4.5.) 결과 : 의견 없음.

5. 검토 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¹⁾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안 제4조 등), 공공급식 지원계획의 보고대상을 확대(서울시의회→서울시의회와 소관 상임위원회)하며(안 제3조제2항), 공공급식위원회 위원의 해촉사유 중 장애라는 단어가 부각되지 않도록(안 제12조제1호) 개정하고자 뜻의되었음.
-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정비는 띄어쓰기(안 제4조 제3호), 일상에서 쓰지 않거나, 어려운 말(안 제8조제2항), 조문체계 정비(안 제9조제1항) 등으로 시민에게 입법 의도를 제대로 알리고, 제도를 쉽게 설명하여, 시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조례로 만든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현행	개정안
<p>제4조(지원 대상) 공공급식의 지원은 비상업적인 단체급식이 이루어지는 집단급식소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급식 영역으로서 시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단체, 시설 등(이하 "대상 기관"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p> <p>1. ~ 2. (생략)</p> <p><u>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노숙인 등 사회복지시설 및 제2조 제6호에 따른 무료 노인급식 등 단체급식을 실시하는 사</u></p>	<p>제4조(지원 대상) 공공급식의 지원은 비상업적인 단체급식이 이루어지는 집단급식소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급식 영역으로서 시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단체, 시설 등(이하 "대상 기관"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p> <p>1. ~ 2. (현행과 같음)</p> <p><u>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노숙인 등 사회복지시설 및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무료 노인급식 등 단체급식을 실</u></p>

1) 법제처 -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어식 표기를 한글화하기 위한 기준과 예시

<u>회복지서비스사업</u>	<u>시하는 사회복지서비스사업</u>
4. ~ 6. (생략)	4. ~ 6. (현행과 같음)
<p>제8조(지도 감독 등) ① 시장은 지원금이 목 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p> <p>② 시장은 대상 기관의 장이 제7조의 의무를 <u>해태하거나</u> 지원목적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교부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p>	<p>제8조(지도 감독 등) ① 시장은 지원금이 목 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p> <p>② 시장은 대상 기관의 장이 제7조의 의무를 <u>게을리 하거나</u> 지원목적을 위반하여 지원금 을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 경 또는 취소하거나 교부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p>
<p>제9조(공공급식위원회의 설치) ① <u>시장은</u> 도 농상생 공공급식의 지속적 추진과 확대 발전 을 위한 정책 및 실행 사항 등을 심의·자문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공공급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p>	<p>제9조(공공급식위원회의 설치) <u>시장은</u> 도농상 생 공공급식의 지속적 추진과 확대 발전을 위한 정책 및 실행 사항 등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공공급식위원회(이하 "위 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p>

- 다만, 안 제4조제3호 중 “사회복지시설”과 “사회복지서비스사업”에 관한 규정이 법 규정과 중복하여 불필요한 설명과 중복적 표현을 정의하고 있지는 않은지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안 제4조제3호 불필요한 설명

본 개정안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을 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노숙인 등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 사업의 대상을 보다 포괄적(한센병, 아동, 한부모, 영유아, 성매매피해자, 정신질환자, 성폭력피해자, 입양자, 위안부, 임산부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본 조례에서 「사회복지사업법」을 준용하고 있는바, 조례의 간결성을 위하여 부수적이며, 불필요한 문구의 삭제를 검토해볼 여지도 있다고 하겠음.

※ 안 제4조제3호 중복적 표현

「사회복지사업법」²⁾은 사회복지서비스를 사회복지사업을 통한 서비스로 규정하고 있고, 사회복지서비스에는 이미 사회복지사업을 내포하고 있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복지서비스사업”이라는 용어는 중복적 표현이라고 보이는바, “사회복지서비스사업”을 “사회복지서비스”로 개선의 여지는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현행	개정안	수정의견
<p>제4조(지원 대상)</p> <p>1. ~ 2. (생략)</p> <p><u>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노숙인 등 사회복지시설 및 제2조 제6호에 따른 무료 노인급식 등 단체급식을 실시하는 사회복지서비스사업</u></p> <p>4. ~ 6. (생략)</p>	<p>제4조(지원 대상)</p> <p>1. ~ 2. (현행과 같음)</p> <p><u>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노숙인 등 사회복지시설 및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무료 노인급식 등 단체급식을 실시하는 사회복지서비스사업</u></p> <p>4. ~ 6. (현행과 같음)</p>	<p>제4조(지원 대상)</p> <p>1. ~ 2. (현행과 같음)</p> <p><u>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u></p> <p>4. ~ 6. (현행과 같음)</p>

2)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4.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5. "사회복지관" 이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복지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6. "사회복지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사회서비스 중 사회복지사업을 통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 또한, 안 제8조의 “해태하거나”를 “게을리 하거나”로 개정함에 있어서 띄어쓰기 규정에 맞는 순화용어(게을리하거나)를 사용하여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의 ‘해태하다’〉

번호	정비 대상 용어		순화 용어
	한글	한자·원어	
3781	해태하다	懈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게을리하다.</u> · 제때 하지 아니하다. · 제때 √ 하지 √ 않다 · <u>게을리 √ 하다(X)</u>

- 안 제3조제2항은 공공급식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함)의 보고 대상을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에서 의회와 소관 상임위원회로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평생교육국에서는 본 조례 제정(2017.7.13.) 이후 지원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으며, 지원계획에 대한 보고도 없었는바, 보고의 대상을 명확히 하는 것은 계획수립 여부 및 실효성 등을 점검하고, 지원계획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현행	개정안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생략)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현행과 같음)
1. ~ 10. (생략)	1. ~ 10. (생략)
② 시장은 지원계획을 생산지 지방자치단체장 및 서울특별시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u>서울특별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u> 에 <u>보고</u> 한다.	② 시장은 지원계획을 생산지 지방자치단체장 및 서울특별시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u>서울특별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u> 와 소관 상임위원회에 <u>보고</u> 한다.
③ 시장은 제4조 각 호의 대상 기관이 공공급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4조 각 호의 대상 기관이 공공급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도농상생 공공급식 사업추진의 **효율성**(과다한 예산편성·전용·불용처리, 생산지 생산능력 미흡, 안전성 검사의 신뢰도 저하, 자치구의 소극적 참여, 중간유통단계 생성으로 인한 가격상승) 및 **효과성**(공공급식기관의 불참, 친환경식재료 사용률 과소 상승, 친환경 식재료 보조금 과다불용, 지역경제 침체 촉진, 1:1 매칭방식의 불합리성 등)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는바, 도농상생 공공급식에 대한 세밀한 조사를 기반으로 계획을 수립했는지 여부와 수립된 계획의 실현 가능성 여부 등에 대한 검증 이후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다만, 의회와 상임위원회 보고사항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5조의3에 따라 보고의 전으로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개정 실익이 있는지는 살펴볼 여지가 있다고 하겠음.

<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계획 보고관련 경위 >

-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 추진계획 수립(2016.12.7. 시장방침)
- 2017년 상반기 공공급식 시범사업 실행계획 수립(2017.3.29. 부시장 방침)
- 서울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제정(2017.7.13.).
- 2018년 공공급식 지원계획 미수립 -기존 계획(2017)에 대한 개선계획 수립(2018.10.4.)
- 2019년 공공급식 지원계획 미수립

- 안 제12조제1호는 공공급식위원회 위원의 해촉 사유 중 ‘심신장애’를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장애’라는 문구가 ‘직무수행’을 가로막는다는 인식과 장애의 부정적 인식을 강화하여 일반 장애인의 직무 수행에도 부정적인 인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하는바, 본 개정안은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개선 또는 사회적 인식개선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①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과 ②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의 ‘자치법 규 인권관련 실태조사’(2017년) 및 ③ 권고³⁾에 따라 발의된 것으로 보임.

※ 2018년 10월 31일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장애인 차별 소지가 있는 위원 해촉 조항을 포함한 서울시 조례 16개를 개정하도록 권고한 바 있음.

현행	개정안
<p>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제11조제4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p> <p>1. <u>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u></p> <p>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p> <p>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p> <p>4. 위원 <u>스스로</u>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p>	<p>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제11조제4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p> <p>1. <u>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u></p> <p>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p> <p>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p> <p>4. 위원 <u>스스로</u>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p>

- 다만, 현행 법령(「민법」, 「형법」 등)은 심신상실(心神喪失), 심신장애(心神障礙), 심신미약/심신박약(心神微弱/心神薄弱) 등 심신(心神)을 마음과 정신을 나타내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으며, 심신장애(心神障礙)는 신체의 장애를 나타내는 용어가 아닌 의사결정 능력 또는 책임능력 여부를 나타내는 용어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로 보고 있음.
- 그러나, 본 개정조례안의 원인이 되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개정문(2016.2.3.)을 보면, 심신쇠약의 심신을 ‘신체와 정신(마음)’의 쇠약이라는 의미로 사용하였으며,

3) 별첨 1. [시 일부 조례의 위원회 위원 위촉해제 사유 개정에 대한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 · 개정문(2016.2.3.) 발췌

제8조 단서 중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를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하기가"로 한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제754조(심신상실자의 책임능력) 심신상실 중에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그러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심신상실을 초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형법」제10조(심신장애인) ①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향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③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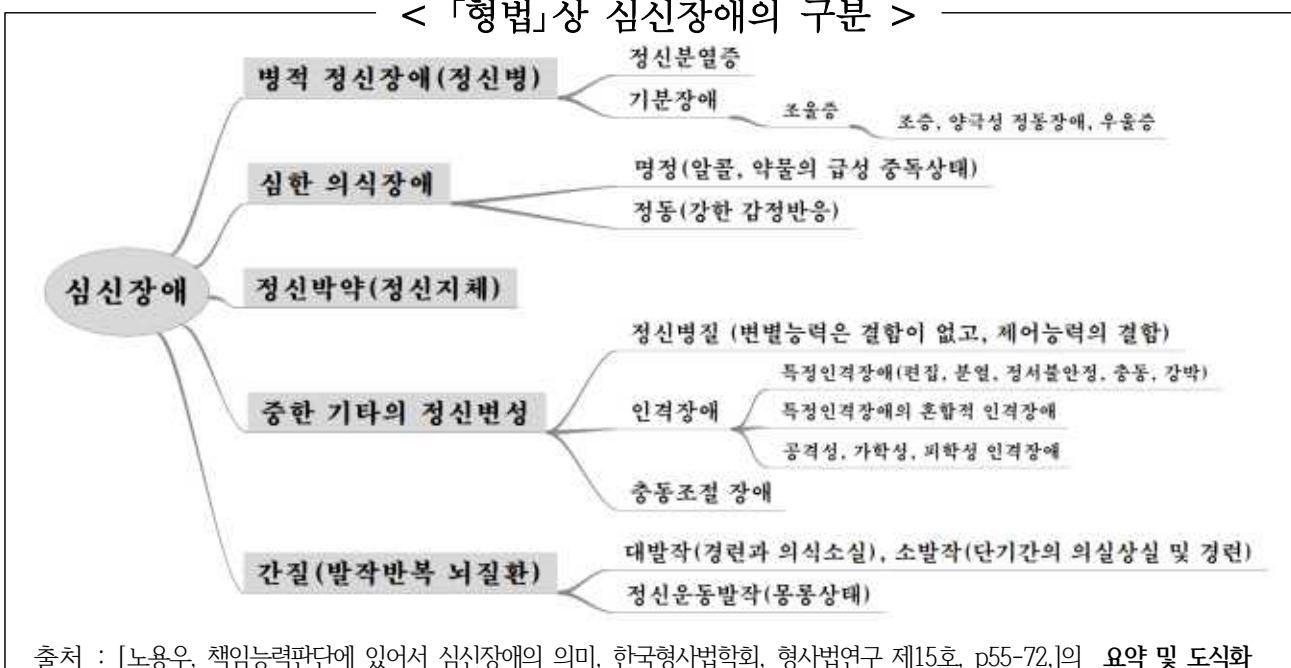
심신쇠약이라는 용어는 법령에 따른 정의가 없고, 마음과 정신의 쇠약 또는 신체와 정신의 쇠약 등 다의적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고 보이는바, '심신쇠약'이 '심신장애'의 뜻을 대신하거나, 내포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용어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심신쇠약이라는 용어는 여러 법령에서 언급되고 있으나, 각 법령에는 용어에 대한 정의에 없고, 법령용어사전, 표준국어대사전, 각종 백과사전 등에 등재되어 있지 않음.

※ 심신쇠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법령 : 「국가인권위원회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24개 법령

※ 표준국어대사전의 정의

- 쇠약(衰弱) : 힘이 쇠하고 약함.
- 장애(障礙) : 1. 어떤 사물의 진행을 가로막아 거치적거리게 하거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게 함. 또는 그런 일.
2. 신체기관이 본래의 제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정신 능력에 결함이 있는 상태.



출처 : [노용우, 책임능력판단에 있어서 심신장애의 의미,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제15호, p55-72.]의 요약 및 도식화

- 법제처는 위원회 위원의 건강에 관한 해촉사유를 규정할 때 심신장애, 질병, 심신쇠약 등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는 용어를 ‘심신장애’로 규정 방식을 통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 법제처, 위원회 위원의 해촉사유 검토 >

IV. 검토

가.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관련 의견

- 현행 입법례에 따르면, 건강에 관한 해촉사유로 ‘심신장애’, ‘질병’, ‘심신쇠약’ 등이 있는 바,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이상을 총칭하는 ‘심신장애’가 가장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심신쇠약’은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허약해진 상태를 말하므로 심신장애의 범주에 포함되고, 위촉된 위원이 ‘국외체류’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는 입법 표준안 제3호의 ‘직무태만·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 따라서, 입법모델과 같이 직무수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원인은 “심신장애”로 규정방식을 통일할 필요가 있음.

출처 : 법제처, 2015.12.1., 법령안 심사기준 - 위원회 위원의 해촉사유 검토, 법제소식(2015년 12월호, 통권 제43호) p2~13 중 10p 발췌

- 심신쇠약을 ‘신체와 정신의 쇠약’으로 간주하더라도 시민이 쉽게 읽고 이해하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조문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현행 법령에서 사용하는 심신의 의미를 정확히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신체상, 정신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를 구분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와 함께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⁴⁾(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과 일치시킬 필요성 여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은 심신장애를 정신질환⁵⁾으로 순화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과 법제처의 법령해석 의견 등을 폭넓게 고려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하겠음.

〈 법률자문 결과 〉

자문내용 : 심신쇠약이 심신장애를 대신할 수 있는 적정한 용어 인지 여부

자문1	자문2	자문3
문제되지 않음. 판단의 전제를 의결에 맡기고 있는바, 명확성의 원칙에 하자가 없음.	의미는 다르나 문제는 없을 것 용어변경을 하더라도 해촉의 판단기준은 달라지지 않을 것.	대체가능 직무수행의 가능여부 판단이 주요하며, 문언사용은 입법재량의 문제임.

〈 안 제12조제1호의 수정의견 〉

현행	개정안	수정의견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1.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1. 신체상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경우 또는 정신질환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4)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 등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희망한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5)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219페이지 : 심신장애(心神障礙) → 정신질환

- 안 제12조는 조 제목을 ‘위원의 위촉 해제’로 규정하고 있으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은 ‘위원 해촉’으로 사용⁶⁾하도록 순화용어를 제시하고 있는바, 조 제목의 수정에 대해서도 고려해 볼 여지가 있다고 하겠음.

현행	수정의견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제11조제4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제11조제4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의 해촉 〉

번호	정비 대상 용어		순화 용어
	한글	한자·원어	
3778	해촉	解囑	해촉

전문위원	김태한
입법조사관	정찬일

6)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제8판) 247p 빌췌

“종전에는 해촉을 위촉 해제로 썼으나, 위촉 해제도 어렵고 ‘해촉’을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해촉을 사용하기로 함.”

별첨1. [시 일부 조례의 위원회 위원 위촉해제 사유 개정에 대한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권고]

시 일부 조례의 위원회 위원 위촉해제 사유 개정에 대한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권고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는 장애인 편견과 차별 소지가 있는 위원 위촉 해제 사유를 포함한 모든 서울특별시 조례의 개정을 권고합니다.

서울시 조례 중 ‘장애인’이 ‘직무수행’을 가로막는다는 인식을 주어 장애 및 장애인의 직무 수행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조항에 대해 ‘장애인’라는 단어가 부각되지 않는 방향으로 조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이하 ‘서울시 인권위원회’)는 2017년 ‘자치법규 인권관련 실태조사’를 제안하여 추진된 바 있습니다. 실태조사의 목적은 시정 운영의 근간이 되는 서울시 자치법규를 전수조사하여 인권친화적인 자치법규 제·개정으로의 유도를 통해 시민 인권을 제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서울시 조례 중 ‘장애를 이유로 한 위원 위촉 해제 사유’ 조례 조항의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시 <서울특별시 주거기본조례>

제16조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라는 문구는 ‘장애인’이 ‘직무수행’을 가로막는다는 인식을 주어 장애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 장애인의 직무 수행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이어질 위험성도 있는 만큼 ‘장애인’이라는 단어가 부각되지 않는 방향으로 조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는 장애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29조는 장애인이 정치 및 공적 생활에 ‘효과적이고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 조성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의 대한민국 보고서 최종견해는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 강화를 위한 인식개선 캠페인’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8조(위원의 신분보장)의 경우에도 “위원이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극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라고 된 부분이 장애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 소지가 있어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로 개정 (16.2.3)한 바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는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 위원 위촉 해제 이유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8조(위원의 신분보장)

위원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 한다. 다만, 위원이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극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전체 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하여 의결로 퇴직하게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위원회 해촉 해제) 시장 등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생략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이에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는 서울시장에게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8조 및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의 위원 위촉 해제 사유 등을 참고하여 장애인 편견과 차별 소지가 있는 위원 위촉 해제 사유를 포함한 모든 서울특별시 조례의 개정을 권고합니다.

참고자료 : 장애인 차별 소지가 있는 위원 해촉 사유 조항을 포함한 서울특별시 조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장애인권리위원회의 대한민국 최초 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
국가인권위원회법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2018년 0월 31일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참고〉

장애인 차별 소지가 있는 위원 해촉 사유 조항을 포함한 서울특별시 조례

	서울특별시 조례명	조 항
1	계약집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2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8조(위원의 임기)
3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4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5	건축기본조례	제18조의2(위원의 해촉)
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제10조(위원의 해촉)
7	역사도시 기본조례	제22조(위원의 해촉)
8	건축 조례	제5조의3(위원의 해임·위촉 해제)
9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10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해고)
11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위원의 해촉)
12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조례	제14조(위원의 제척·회피 등)
13	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위원의 해촉)
14	주거기본조례	제16조(해촉)
15	한양도성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16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제9조(위원의 해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차별금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29조(정치 및 공적 생활에 대한 참여)

당사국은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정치적 권리와 기회를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다음의 사항을 약속한다.

- (나) 장애인이 차별 없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공적 활동 수행에 효과적이고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하고, 다음을 포함한 장애인의 공적 활동에의 참여를 장려할 것
- (1) 국가의 공적·정치적 활동과 관련된 비정부기구 및 비정부단체와 정당 활동 및 운영에의 참여
 - (2) 국제적, 국내적, 지역적 및 지방적 차원에서 장애인을 대표하는 장애인 단체의 결성과 가입

장애인권리위원회의 대한민국 최초 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

제8조(인식제고)

16. 위원회는 당사국이 인권의 주체로서 장애인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한 인식개선 캠페인을 견고히 할 것을 권장한다. 특히 위원회는 당사국이 협약의 내용 및 목적에 대해 정부 공무원, 국회의원, 언론, 일반 대중에게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홍보 및 교육을 진행할 것을 권고한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8조(위원의 신분보장)

- 위원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이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극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전체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로 퇴직하게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 등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희망한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회피신청 대상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